

CEO
Report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2006. 7

보 험 개 발 원

CR 2006 - 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2006. 7

이 태 열

조 혜 원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
중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
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소액지급결 제시시스템의 개념과 현황	2
III. 소액지급결 제시시스템 참여의 필요성	6
IV. 소액지급결 제시시스템 참여방안	9
V. 보험산업을 위한 제언	13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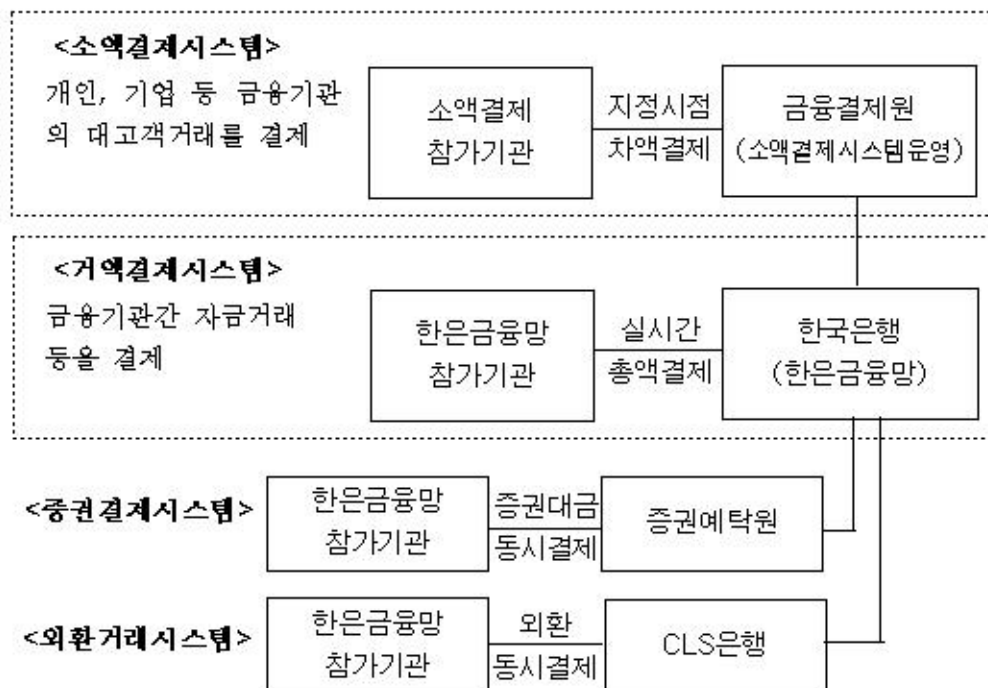
-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소액지급결제기능의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주요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산업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소인 지급결제기능을 타산업에 의존하게 되는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및 은행의 업무영역 침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면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보험산업이 지급결제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험산업의 독자적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참여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은 공신력 있는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금융결제원에의 가입 등의 부담을 지어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II.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개념과 현황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개념

-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를 의미함.
- 지급결제시스템에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거래시스템 등이 있으나 일반 소비자를 위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가 필수적임.
-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건당 금액이 적고 건수 및 참가기관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가기관간 채권·채무액을 상제한 후 차액결제(net settlement)하는 방법을 사용함.

<그림 1>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구조



□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 보험산업이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지로,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공동망 등 총 5개망임.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5개 망에 특별참가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도 5개망에 대한 가입을 통해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표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주요 내용

구분	결제대상	도입연도	결제방식
어음교환시스템	어음·수표 및 증서	1910	장표방식
지로시스템*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 등 수납, 급여이체	1977	장표 및 전자방식
①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전자방식
② 타행 환공동망*	소액송금	1989	전자방식
③ 전자금융공동망*	홈·편뱅킹, 인터넷뱅킹 송금	2001	전자방식
④ CMS공동망*	대량자금 이체	1996	전자방식
⑤ 지방은행공동망	예금 입·출금, 송금	1997	전자방식
⑥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전자방식
⑦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B2C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2	전자방식

주 : ①~⑦은 은행공동망임.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4. 12.

2.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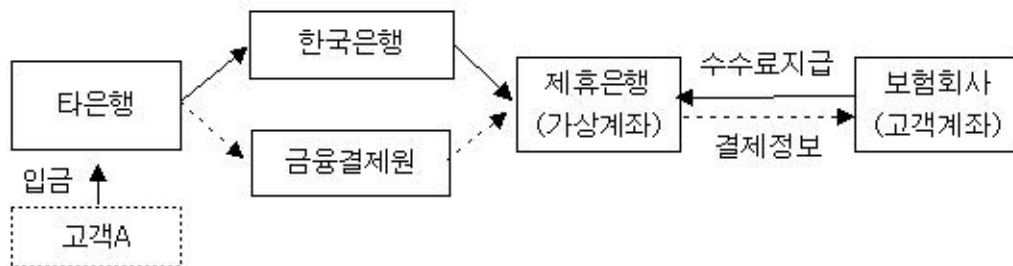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자격이 없어 개별회사별로 제휴하는 은행을 통해 편뱅킹서비스(firm banking service)를 이용함.

○ 보험회사는 고객계좌와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연계하여 지급결

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실질적인 입출금은 제휴은행에 개설한 보험회사의 모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보험회사 고객별 입출금 정리는 가상계좌의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함.
- 제휴은행은 지급결제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금융결제원에 보내나, 타은행과의 자금 정산은 익일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실시함.

<그림 2> 보험회사의 은행계좌들 이용한 보험료 입금 사례



3. 현행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기능의 한계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기능을 개별 회사별로 개별 은행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 측면의 부담도 가중될 것임.
- 현행 펌뱅킹서비스와 증권산업의 CMA계좌 등은 모두 개별금융사가 개별은행의 지급결제망에 의존해서 실시하는 서비스로서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필요로 함.

- 제휴은행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시간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지급결제 건수가 증가할수록,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은행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와 수수료 부담이 커져갈 수밖에 없음.

III.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필요성

- 금융점업화, 규제완화로 금융업권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 기능은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가장 핵심적 기반을 제공함.
- 더욱이 보험산업 성장의 특징과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은행수수료 부담, 타금융권과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지급결제기능 확보가 요구됨.

1. 미래 보험산업 성장 측면

- 현재 보험산업의 경우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낮은 편이지만, 미래 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의 필요성이 중요시 될 것임.
- 변액유니버설보험, 장기간병보험, 민영건강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서 지급결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기존의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회수가 제한적이고 보험금을 일시 수령하는 상품이 대부분으로 지급결제 수요가 한정되어 있음.
 -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 보험금 수령회수가 잦은 장기간병보험, 민영건강보험 등은 지급결제 횟수를 증가시킬 것임.
-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 퇴직연금 등 연금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도 지급결제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은행의 경우 PB(Private Banking) 업무에 주력하고 증권산업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신탁 및 랩어카운트(wrap account)에 의한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2.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측면

□ 현행과 같이 은행의 펌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할 것임.

○ 보험회사는 은행의 시스템 개발 및 제공 비용을 수수료 납부로 보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은행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보험업계가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2005년 약 812억원(생보 636억원, 손보 175억원)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8.0% 증가함.
- 향후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수요 증가와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 부담의 증가도 지속될 것임.

<표 2> 보험회사의 은행수수료 지급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생보사	44,943	50,159	60,803	62,621	63,642	7.2%
손보사	10,385	11,241	15,416	17,032	17,510	11.0%
전 체	55,329	61,400	76,220	79,654	81,152	8.0%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보험회사의 요구에 맞게 은행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수정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은행은 인수 및 합병으로 과점화, 대형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대은행 협상력이 더욱 약화될 것임.
-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국내 일반은행 수는 총 66개에서 2006년 현재 총 8개로 대폭 감소하였음.

3. 금융업권간 공정거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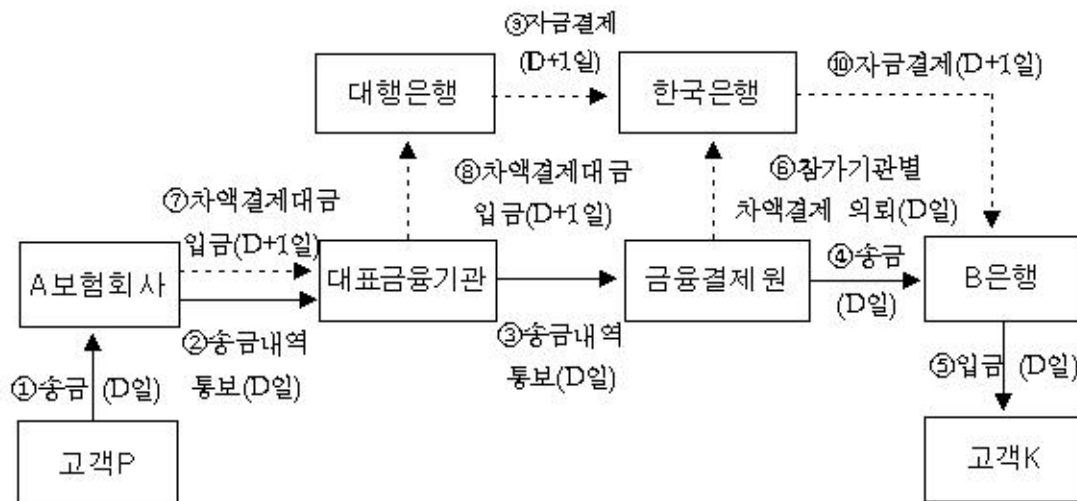
-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를 선점한 은행에 증권 및 보험산업이 의존하는 현 체계는 금융권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증권산업을 포함한 전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결제기능의 부재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매우 취약하게 할 것임.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에 판매권유자제도가 허용되어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판매권유자가 자체 지급결제서비스를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면 보험산업 대면채널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Ⅳ.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1.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구성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대표금융기관*이 대행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기본 구조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법이며,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임.
- 대표금융기관이 산업내의 차액결제를 실시하고 타업권과의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실시함.

<그림 3>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기본구조(안)



* <참고> 서민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대표금융기관으로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안)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을 대표금융기관으로 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2.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 대표금융기관은 소액지급결제기능과 관련해서는 보험산업의 지급결제 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표금융기관이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불이행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대표금융기관은 발권기관이 아닌 만큼 순채무한도*의 설정, 지급준비금*의 예치,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부담제도 등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함.
- 지급결제용 유동성에 대해 100%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지급준비금 내에서 순채무한도를 관리한다면 보험산업의 결제불이행 위험은 사실상 완전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만을 수행하는 대행은행은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역할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참고>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은 당일 이루어지나, 참가기관간 차액결제는 익일 이루어지므로 미결제채무의 발생이 불가피함.

① 순채무한도 : 한 은행이 영업시간 중 다른 은행들에게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에서 다른 은행들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상한을 의미하며, 순채무한도의 설정으로 과도한 채무 증가를 억제함.

② 지급준비금 :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담보중권을 예치하거나 지급준비금을 적립함.

3. 지급결제 계좌 설정

-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등은 예금수취 업무가 가능하고, 증권산업은 고객예탁금을 지급결제 계좌로 활용함과 달리 보험산업은 지급결제를 위한 별도의 계좌 설정이 필요함.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유니버셜상품을 개량하여 지급결제계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위험보장부분을 최소화하고 입출금 횟수, 사업비 부과 방식, 입출금 수수료 등의 문제를 개량하여 보험의 기능을 보유하되, 입출금을 비롯한 지급결제기능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급결제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계정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금융기관에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금융결제원 가입비

- 금융결제원에 대한 가입비가 비현실적으로 산출되어 소액지급결제 시스템 참여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참가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함.
 - 가입비의 산출을 위해 예상 수익 계산시 인프라 구축 비용, 지급결제망 구축 이후에도 타금융권을 통해서 이체되는 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수익의 증가를 통해 가입비 납부가 가능해야 할 것임.

5. 관계법령 개정

□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에 내국환*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보험업법 시행령에 내국환 업무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으로 지로 수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 공공 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와 국고금 수납 대행 업무를 관련 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분리계정 및 외부 예탁을 위한 법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함.

○ 대표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도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의 지급결제기능 수행과 지급준비금의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참고> '내국환' 업무란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행해지는 자금 지불이나 징수를 중개하는 것으로 지급결제 기능 수행의 근거로 작용함.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관련 법령 내에 참가기관의 업무범위로 '내국환'을 명시하고 있음.

V. 보험산업을 위한 제언

1.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의의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금·산 분리 논쟁 및 업종간 영역 다툼 문제를 피하면서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은행 소유를 통한 지급결제기능 수행은 다수의 보험회사가 산업계 자본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잡한 논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대출 기능을 제외한 Narrow Banking의 경우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 수입을 업무 범위로 추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됨.
- 따라서 보험의 고유 업무를 기반으로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표 3>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의의

구분	지급결제	예금 수입	대출
보험상품 기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		
Narrow Banking	○	○	
은행소유	○	○	○

-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에 더하여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 랩어카운트 (wrap account)업무로 경영 범위 확대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는 간투법상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겸영 허용을 보험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산업 자체의 자발적인 노력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동의 공감대와 참여 의지임.
-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지급준비금 확보,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 업계 공동의 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함.
-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는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느냐 여부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함이 더욱 중요함.

CEO Report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발행일	2006년 7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368-4177)으로 하여 주십시오.